

동간경계조정 (안) 심사보고서

1995. 4. 29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5. 4. 26
- 다. 회부일자 : 95. 4. 26
- 라. 상정일자 : 95. 4. 28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총무과장 김치권)

가. 제안사유

- 대통령령 제14629호('95. 4. 20 시행)에 의거, 구·군간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성서4동 관할구역인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지역, 즉 죽전동(성서4동)1번지 외 27필지 0.061㎢는 불합리하여 동간 경계를 조정 용산동(성서1동)에 편입하기 위해 구의회 의건을 청취코자 함.

나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4조제10항제24호
(동간 경계조정 의 권한을 내무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위임)

다. 주요골자

- 죽전동(성서4동) 관할구역 중 28필지를 용산동(성서1동) 관할로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 조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백창기)

달서구와 서구간의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 구역이 성서4동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행정업무 수행상 고속도로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구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죽전동1번지 외 27필지 임야 0.061㎢를 용산동(성서1동)에 편입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- 4. 토론요지 : 없음
- 5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반대 : 없음
- 7. 첨부 : 동간경계조정(안)사본 1부.

동간경계조정(안)

의안	95-22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5. 4.

제출자 : 달서구청장
(총무과)

1. 제안이유

- 대통령령 제14629호('95. 4. 20시행)에 의거 구·군간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성서4동 관할구역인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지역, 즉 죽전동(성서4동) 1번지 외 27필지 0.061㎢는 불합리하여 동간 경계를 조정 용산동(성서1동)에 편입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2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24호
(동간 경계조정의 권한을 내무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위임)

3. 주요골자

- 죽전동(성서4동) 관할구역 중 28필지를 용산동(성서1동) 관할로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조정

4. 설명서 1부 : 별첨

동간경계조정 (안) 설명서

대상지역 및 조정(안)

-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(성서4동)지역을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용산동(성서1동)으로 조정

조정규모

- 28필지 0.061㎢

조정사유

- 우리 구와 서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지역은 현재 관할행정구역인 성서4동과 동떨어지게 되어 행정수행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용산동(성서1동)에 편입코자 함.

동안 경계조정 도면

